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2026. 09.

파 주 시
하수도과

1. 개 요

본 안내서는『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용역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반드시 본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한다.

2. 용역사업 집행계획

- 가. 용 역 명 :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 나. 용 역 비 : 금8,310,340원 [부가세별도]
- 다. 관련기관 : 업체지정-파주시(하수도과)

3. 용역의 주요내용

- 가.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봉서
- 나. 과업내용
 - 1) 정기안전점검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2회)
 - 항타 및 항발기(2회)
 - 2)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 가. 표 지(양식 1)
- 나. 참가신청서(양식 2)
 - 용역관련등록증, 자격증 사본
- 다. 목 차
- 라.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 조직표(양식 3)
 - 참여기술자의 총괄표(양식 4)
 -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양식 5)

바.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 6)

사. 신 용 도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현황(양식 7-8)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양식 9)

자. 업무 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현황 (양식 10)

차. 자기평가서(양식 11)

카. 가격제안서(양식 12)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나 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나.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발급 경력 증명서로 평가하며, 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실적증명 및 참여자명단 사본을 첨부한 것에 한해 인정한다. 또한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관리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 안내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누락 및 허위기재시 인정치 아니함)

마. 자기평가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제출 기한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함.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자. 평가서 작성시 작성기준은 본 안내서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을 따른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크 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 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지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표 지 :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 (좌철)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031-940-5551)로 문의 바랍니다.

(양식 1)

2cm	2cm
2cm	접수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2026. 09.

회 사 명

(양식 2)

참 가 신 청 서

본인은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에서 발주하는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하고자 불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계약해지 등 귀 본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불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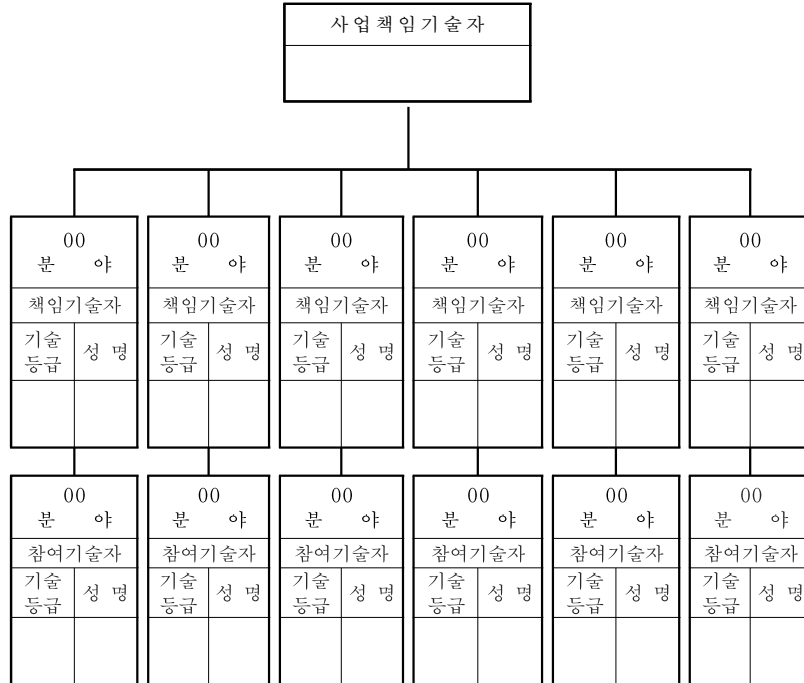
2026년 09월 일

참 가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주시장 귀하

(양식 3)

참여기술자 조직표



-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00분야 기술자”로 하고, 분야별책임기술자와 중복 참여는 불가
 2.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각 각 1인만 기재 함

(양식 4)

참여기술자의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최 종 학 력 (학위)	기술자 등 급	자격사항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월)	건수/금액 (백만원)	비고
					종류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자									
ex)분야별 책임기술자									
토목 안전관리									
ex)분야별 참여기술자									
토목 안전관리									

- 주) 1. (양식 3)에 포함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전문분야)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경력을 인정한다.
 5. 자격, 경력,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은 (양식 5)과 동일하게 작성.

(양식 5)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명	연령	만세	소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해당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기간(0년0월)	비고
계				

나. 참여기술자 참여실적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년,월,일 ~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 년,월,일)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위	
			지분금액 (총금액) 기재							
합계						건				

- 주) 1.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요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자 참여실적은 공고일부터 5년을 기준으로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한함
4.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양식 6)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당해업체 용역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백만원	백만원		

- 주) 1. 회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2.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요하고, 발주처 확인 실적을 첨부한다.

(양식 7)

신 용 도

회사 및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

가. 회사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 체 명	처 분 명	비 고
	시정 또는 부실	

- 주) 1. 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증빙서류 첨부
2. 별점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나. 참여기술자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구 분 (참여분야)	성 명	처 분 명	비 고
		시정 또는 부실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현황 기재
2.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경력증명서 상의 부실별점란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의 부실별점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양식 8)

가. 업체(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회사명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부정당업자 처분사유
계					

- 주) 1. 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부정당업자로 지정 받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없음” 이라고 표시한다.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0 개월)로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자(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분 야	성 명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명	용역기간	제한기간 (일수)	제한사유

-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을 기재.

(양식 9)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 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양식 10)

업무 중복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

구 분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참여분야	성명	참여기간	잔여기간	비고
사업책임 기술자									
	소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소계								

- 주) 1. 안전점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되어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용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용역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건수에 관계 없이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6개월 이상 중지중인 용역의 경우 중지 공문 첨부)
3. 참여 분야란에는 조직표상의 책임기술자 순으로 작성.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을 기재.

(양식 11)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평가 전체집계	점수	비고
참 여 기 술 인 (45)	책임기술인 (25)	등 급		절대 평가	-			
		경 력			12			
		실 적	건수		7			
			금액		6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등 급		절대 평가	3			
		경 력			7			
		실 적	건수		5			
			금액		5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회사실적 (20)	실 적	건수	절대 평가	10			
			금액	절대 평가	10			
신 용 도 (15)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6)	지정기간		절대 평가	6			
	업무정지 (6)	지정기간		절대 평가	6			
	재정상태 건설도 (3)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업 무 중 첩 도 (20)	책임기술인(12)		절대 평가	12				
	분야별 책임기술인(8)		절대 평가	8				
합 계					100			
가 점					0.1 ~ 0.3			

(양식 1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사업명		
가격제안	금 원정(₩)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